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·복지센터 내
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446
------	------

2020. 4. 24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4월 3일, 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8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】

-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20. 4. 24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경제정책실장 김의승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“G밸리 문화·복지센터” 건물(’21. 2월 준공 예정) 內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이 운영하는 “IoT 기술지원센터” 유치를 위해 임대 공간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

제17조제5항제4호에 의거,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-58번지 외 2필지
- 사용자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
- 허가면적 : (토지) 67.1㎡, (건물) 357.46㎡
- 허가기간 : ' 20.12.~ ' 25.12.(5년)

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에서 운영하는 “IoT 기술지원센터” 는 IoT(사물인터넷) 제품 개발 과정에서 장비 지원, 무선 성능 검증, 품질개선 등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임.
-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IoT 기술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G밸리 내에 유치함으로써, “G밸리 일대를 IoT 기반의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육성” 하는 市 정책 사업에 기여하고자 함.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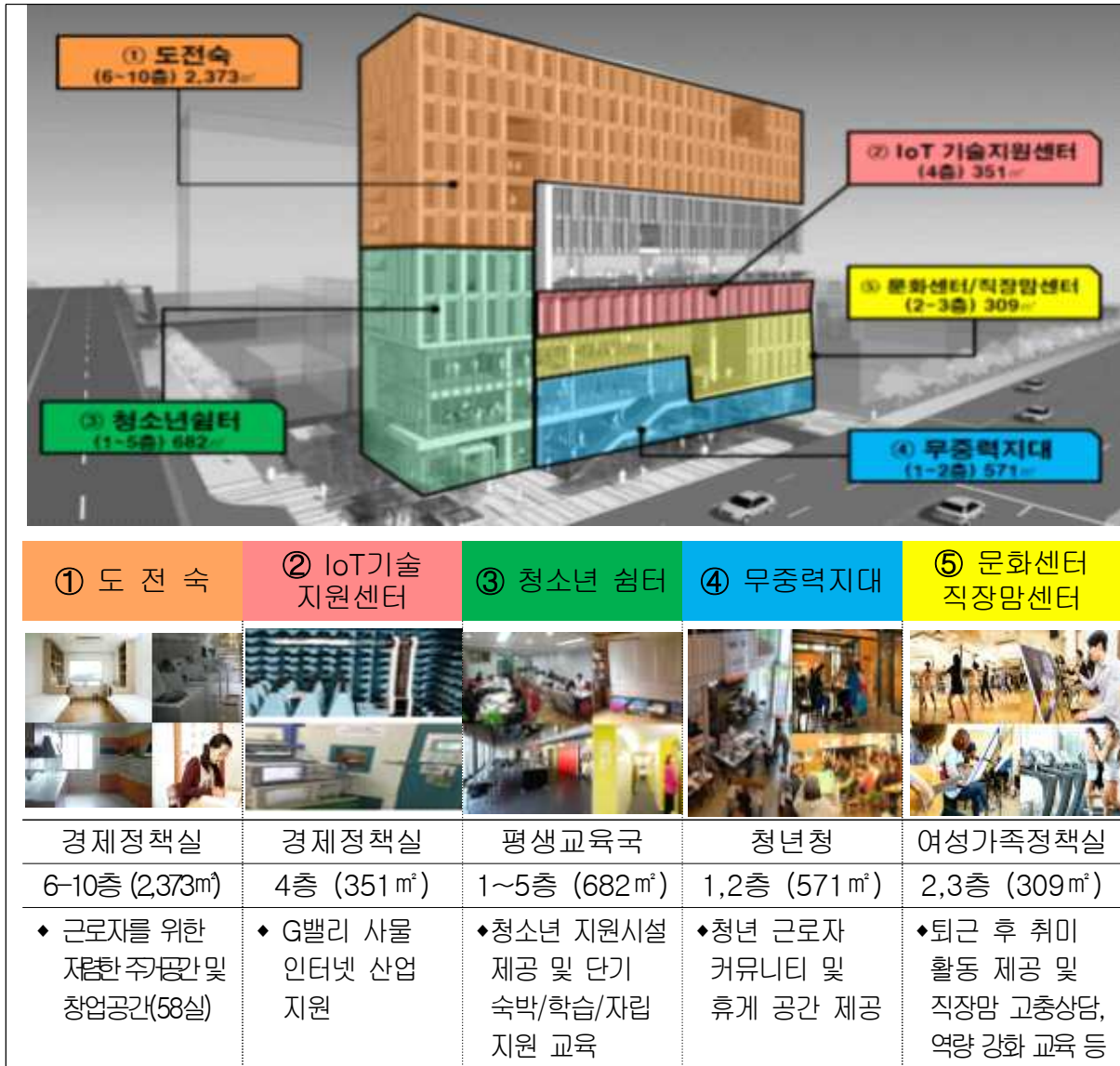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2021년 준공예정인 G밸리 문화·복지센터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‘IoT기술지원센터’를 유치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
나. G밸리 문화·복지센터 개요

- G밸리 문화·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)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(서울디지털산업단지)에 노동자 지원시설과 문화·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기존 가산문화센터와 그 인접부지를 통합 개발해 노동자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임.
 - 센터는 지하 2층~지상 10층(연면적 6,017㎡) 규모로 건축 중이며,
 - ▷ 저렴한 임대 주거공간인 노동자기숙사, ▷ 청소년 쉼터, ▷ 무중력 지대(청년활동 지원 공간), ▷ 문화센터, ▷ IoT기술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운영될 계획임.
 - 당초 올 7월 준공예정이었으나, 시공업체의 부도로 내년 2월로 연기되는 등 입주기업의 공간 이전과 운영예산 집행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.

<G밸리 문화·복지센터 층별 운영계획>



※ 외부계단 및 G-DECK 시설 면적 제외

다. IoT 기술지원센터 현황

- IoT¹⁾기술지원센터(이하 “IoT센터”)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“과기부”)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)에서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의

1) Internet of Things(사물인터넷) : 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.

활성화를 목적으로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신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임.

- IoT센터의 주요 업무는 ▷사물인터넷 제품의 성능 검증과 품질 개선 등의 기술·장비 지원, ▷현장 컨설팅, ▷기술협력 네트워크와 기술교육 지원 등임.

- 서울시와 진흥원은 2016년 G밸리 IoT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²⁾을 체결한 이후,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개발 지원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.

<IoT기술지원센터 제품 개발 지원 실적>

(단위 : 건)

연도	송도	가산	합계 (기업수)
2015	1,503	619	2,122 (262개사)
2016	1,416	648	2,064 (261개사)
2017	1,474	662	2,136 (280개사)
2018	1,563	743	2,306 (314개사)
2019	1,644	886	2,530 (365개사)

- 현재 과기부는 가산과 인천 송도 두 곳에서 운영 중인 IoT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가산센터를 폐쇄하고 송도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.

2) 서울시는 신축 중인 시설 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물인터넷 시험환경을 조성·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, 이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법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감면하여 산정하기로 함(2016.12).

<IoT기술지원센터 개요>

구 분	IoT기술지원센터(송도)	IoT기술지원센터(가산)
개소일	- 2008. 6.	- 2011. 5. (KCA → '14. 7 NIPA 이관)
소재지	- 인천광역시 연수구 벤처로 82 정보통신산업진흥원(송도분사무소)	-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 206호
시설 현황	- 건물 : 연면적 18,246㎡ [자가] - 장비 : 총 169대	- 건물 : 연면적 291㎡ [임대] - 장비 : 총 18대
기술 지원 분야	- 근거리통신(RFID/IoT, 전자파, NFC, WiFi, BT, LoRa 등) 기반 IoT 제품의 신뢰성 및 무선성능개선 등 기술 지원	- M2M통신(2G/3G/4G&LPWA 등) 기반 IoT 제품의 테스트환경 제공 및 통신 사업자 제품검수 지원

- 이에 진흥원은 양호한 교통 접근성과 5G 사물인터넷 기술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하여 G밸리 IoT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대와 관리운영비 지원 등을 요청하였음.

라.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 검토

-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)제24조에서 ▷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, ▷기부재산의 기부자 등의 직접 사용, ▷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자의 신축기간 중 부지 사용, ▷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.
- 입주 예정인 IoT센터의 운영기관인 진흥원은 법 시행령과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연구기관에 해당³⁾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함.

3)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」 제3조(연구기관의 지정) 10. 「정보통신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

- 현재 IoT센터의 주된 이용기업(전체 365개)이 서울(109개), 경기(145개)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G밸리를 사물인터넷 기술기반의 융·복합 제조업 중심의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의 준치가 필요함.
 - 특히, 진흥원이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사물인터넷 분야 장비제공, 연구개발과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고, 국내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통신망과 연동한 사물인터넷 제품의 검증·상용화 사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어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됨.
 -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G밸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의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바 있음.
- 무상사용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(1억 9천 3백만원)이고, 사용료 감면 규모는 연간 3천 8백만원(월 322만원)임.

<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>

구 분	내 역				사 업 명	사용자	심의 결과
	대 상	수량	면적(㎡)	기준가격(천원)	사용료(천원)		
토지	1	67.1	222,790	5,570	G밸리 문화·복지센터 內 “IoT 기술지원센터” 운영	정보통신 산업 진흥원	적정
건물	1	357.46	1,324,786	33,120	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		

- 다만, 서울시가 G밸리 문화·복지센터 관리·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IoT센터의 임대료 수입을 이미 산정하였는바, 여건 변화에 따라

사용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.

- 한편, 국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서울시 행정재산을 현재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음.⁴⁾

4)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일부 공간(토지 4,619㎡, 건물 4,075㎡)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로 운영 중(2019.1.1.)이며, 문화재청 산하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풍납토성 발굴조사를 위해 임시 사무실과 창고(토지 42㎡)로 사용 중(2019.11.1.)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·복지센터 내 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14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“G밸리 문화·복지센터” 건물 (’21.2월 준공 예정) 內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이 운영하는 “IoT 기술지원센터” 유치를 위해 임대 공간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의거,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- 소재지 :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45-58번지 외 2필지
- 사용자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
- 허가면적 : (토지) 67.1 m^2 , (건물) 357.46 m^2
- 허가기간 : ’20.12.~ ’25.12.(5년)

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에서 운영하는 “IoT 기술지원센터”는 IoT(사물인터넷) 제품 개발 과정에서 장비 지원, 무선 성능 검증, 품질개선 등의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임.

-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IoT 기술지원 센터를 지속적으로 G밸리 내에 유치함으로써, “G밸리 일대를 IoT 기반의 융·복합 산업거점으로 육성”하는 市 정책 사업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, 제13조제3항제14호
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20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'20.1.16.)
 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6조제2항제3호
 - 심의결과 : 적 정 ('20.1.23.)

※ 작성자 :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개발팀 최소영(☎2133-8464)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, 시행령 제13조, 제17조(사용료의 감면)
-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(연구기관의 지정)

◆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(사용료의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 2.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 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◆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(사용료의 감면)

-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6. 7. 12.>
 4.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

◆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

-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12.4>
 1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(이하 “정부출연연구기관 등”이라 한다) 또는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

◆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(특정연구기관)

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·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(이하 “특정연구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◆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(연구기관의 지정)

법 제2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.

10.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